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09 발의연월일: 2024. 9. 24.

발 의 자:김태선・박홍배・맹성규

정준호 • 이훈기 • 김태년

안호영 · 김남근 · 이기헌

박균택 • 권칠승 • 박 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('22.12)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 년까지 육상, 육수 및 연안·해양 지역의 30%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·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'쿤밍-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 양성 프레임워크'를 채택하였으며,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.

우리나라도 환경부,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·관리하고 있으며, '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'('16)에 따라 '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'를 구축하여 국내 보호지역 현황 정보 관리 및 대국민 제공 중이나 구축·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.

이에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지역 관

면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,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 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(안 제11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(生物種)정보"를 "(生物種)정보, 국가 보호지역 정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・	제11조(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
운영 등) ①환경부장관은 자연	운영 등) ①
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	
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	
태・자연도, 생물종(生物種)정	(生物種)정보, 국
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	<u>가 보호지역 정보</u>
합지리정보시스템(이하 "자연	
환경정보망"이라 한다)을 구축	
• 운영할 수 있다.	<u>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